퇴직위로금 지급규정

제정일 2019 년 05 월 01 일

제 1 조 (목적)
본 규정은 0 0 0 은행 서울사무소 사원의 퇴직위로금(이하 퇴직위로금이라 한다) 지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퇴직위로금의 정의)
퇴직위로금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 또는 조직구조 개편(head count 감소 포함) 계획에 따라 퇴직하는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규정 (취업규칙)에 정한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금이다.

제 3 조 (지급대상)
① 회사는 회사규정(취업규칙)이 정한 정규직 사원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.
② 상근고문 및 기타 임원으로 대우하는 자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4 조 (계산방법)
회사는 퇴직위로금으로서 법정 퇴직금 계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법정퇴직금 = 계속근로연수 (N) × 30 일의 평균임금
퇴직위로금 = {[N+(N × 50%)]+ 6} × 30 일의 평균임금

제 5 조 (지급시기)
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사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는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6 조 (적용제외)
① 본 규정은 정규직 직원으로 1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.
② 본 규정이 정하는 퇴직사유와 지급대상자 조건을 충족 할지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규정이 정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회사의 해고결정에 대해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사자 간 화해나 조정이 성사되어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본 규정은 2009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동 의 서

0 0 0 은행의 아래의 사원은 노사간 합의로써 '퇴직위로금지급규정'을 작성하여 2009년 5월 1일부로 시행하는 데 동의합니다.

NO	직책	성명	날인	NO	직책	성명	날인
1				2			
3				4			
5				6			
7				8			
9				10			
11				12			
13				14			